

## ① 개정개요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|
|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<br/>- 취득세·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,<br/>지역자원시설세 면제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주민의 공동소유 선박<br/>- 취득세 면제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주민세 <small>사업소분·종업원분</small> 면제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사후관리 규정<br/>-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<br/>- 1년 이내 직접 미사용<br/>- 직접 사용 2년 이내 매각·증여 등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세목 확대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재산세 등 감면 신설<br/>- 취득세, <u>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</u><br/>면제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주민세 <u>감면 종료</u>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사후관리 완화<br/>- (좌동)<br/>- 1년 이내 직접 미사용(<u>단, 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</u>)<br/>- (좌동)</p> |

## □ 개정내용

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
-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양식장 등 해양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
- 감면세액이 미미한 점 등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감면 종료
-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리화